

■ 목 차

■ 소식 ■

지평, '2015년 미얀마 투자 및 법제 환경 변화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2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국내은행의 중국 NPL 자산매각 자문4
 한국 요식업체의 중국법인 자산처분 자문4
 한국 솔루션업체의 중국법인 적립금 사용 관련 자문.....5
 한국 요식업체의 중국 가맹사업 자문5
 한국인 개인과 중국화장품업체와의 합작투자 자문6
 한국 화학보조제 제조법인과 중국업체의 발명특허 침해 소송 2심 수행6
 한국 제조법인의 중국 가맹사업 자문7
 한국 특수글라스 제조법인과 중국법인 간의 대리계약분쟁 소송 수행7
 한국 자동화설비 제작업체와 중국합자법인 간의 구매계약분쟁 중재 대리8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중국 외자기업 외환자본금 자율환전제도 전면 시행9
 [베트남] 개정 사회보험법(Law on Social Insurance 2014)..... 1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 진출(Master Franchisee 선정 방식) 시 주요 유의사항 15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사상 제일 엄격한 「식품안전법」 통과.....18
 국무원,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 발표..... 18
 국가외환관리국, 외자기업 외환자본금 인민폐 환전 방식 개혁.....19
 [캄보디아] 선거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법률(Law on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시행 20
 [일본] 개정회사법 시행..... 21
 민법개정안 각의결정 23
 2015년도 세제 개정법 성립..... 23
 암반규제개혁 3가지 법안 각의결정 24

■ 소식 ■

지평, '2015년 미얀마 투자 및 법제 환경 변화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5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2015년 미얀마 투자 및 법제 환경 변화 세미나'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통합투자법 개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률들과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불명확한 규정과 당국의 실무 관행으로 투자자들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어, 지평은 현지에서 쌓아온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지난 3월에 진행된 미얀마 양곤 현지 세미나에 이어 서울에서도 2015년 미얀마 법제 환경을 조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지평 본사 미얀마팀장인 정철 변호사와,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의 유정훈 변호사가 '미얀마 최근 법률 및 사업 환경 변화'를, 띠라와 경제특구 사무국 실무 책임자와 유정훈 변호사가 '띠라와 경제특구 관련 동향'을,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의 이준엽 공인회계사가 '미얀마 세무 및 회계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세계일보 - 법무법인 지평, 27일 '미얀마 투자' 주제 세미나 개최\(2015. 5. 27.\)](#)
- [국토일보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투자 세미나 개최\(2015. 5. 28.\)](#)
- [뉴스토마토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투자 세미나' 열어\(2015. 5. 27.\)](#)

[관련 사진]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국내은행의 중국 NPL 자산매각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국내은행을 대리하여 중국 NPL 자산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요식업체의 중국법인 자산처분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요식업체를 대리하여 중국법인 자산처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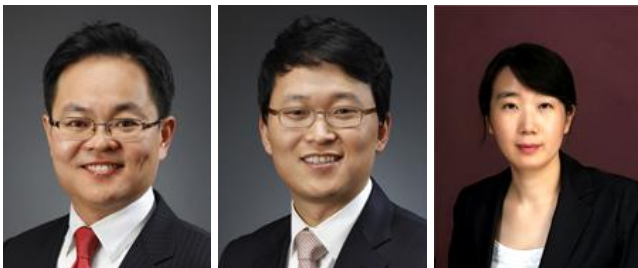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솔루션업체의 중국법인 적립금 사용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솔루션업체를 대리하여 중국법인 적립금 사용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요식업체의 중국 가맹사업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요식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가맹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인 개인과 중국화장품업체와의 합작투자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인 개인과 중국화장품업체와의 합작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한국 화학보조제 제조법인과 중국업체의 발명특허 침해 소송 2심 수행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화학보조제 제조법인과 중국업체의 발명특허 침해 소송 2심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한국 제조법인의 중국 가맹사업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제조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가맹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김옥림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특수글라스 제조법인과 중국법인 간의 대리계약분쟁 소송 수행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특수글라스 제조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 간의 대리계약분쟁 소송을 수행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장옥염 중국변호사

한국 자동화설비 제작업체와 중국합자법인 간의 구매계약분쟁 중재 대리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자동화설비 제작업체를 대리하여 중국합자법인 간의 구매계약분쟁 중재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장옥영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중국 외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율환전제도 전면 시행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국 정부는 올해 3월 30일에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결제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이하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를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시행은 중국 정부가 지난 해 8월부터 천진빈해신구, 소주공업원구를 포함한 16개 시범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은 외화자본금의 자율환전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환전제도'라 함은 외자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지급결제제도'에 대응하는 제도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외자기업에게 지급처가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할 자금 규모 등을 일련의 서류로 증명함으로써 비로소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급결제제도는 투기성 자금의 인민폐 환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인민폐가 꾸준히 평가 절상되고 있는 추세에서 외자기업의 환율리스크 관리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시행으로 외자기업은 자율적으로 외화자본금의 인민폐 환전 여부 내지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현재 자율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자본금의 한도는 잠정적으로 100%로 하되 국가외화관리국에서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해당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외환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자율환전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내용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기업 외에 일반적인 외자기업도 자본금을 이용하여 중국 내에서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본금을 이용한 외자기업의 지분투자는 2008년 외환당국의 규정에 의하여 법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외자기업의 중국 내 지분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인민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로 설립된 외자기업은 사실상 지분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여전히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적용되고 있어 해당 목록상 금지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즉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에 의하여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도 자본금을 이용하여 중국 내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외자 진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시행으로 외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이용 편의성은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개정 사회보험법(Law on Social Insurance 2014)



(법무법인 지평 유동호 미국변호사·하노이 사무소장)

2014년 공표된 개정 사회보험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과 더불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베트남 3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사회보험금액은 급여의 26%(사용자 부담 18%, 근로자 급여공제 8%)에 해당하여 의무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현지 근로자와 회사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베트남 일부 지역의 경우 사회보험 일시금을 폐지하는 취지의 개정법 규정에 반발하여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사회보험법은 대체로 납부 수준과 체계에 있어 현행법과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숙지해 놓는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개정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정 사회보험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사회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의무사항일지 선택사항일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관련 시행령이나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많은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질병,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납부 수준이나 체계는 현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 근로자의 경우 산재, 질병, 사망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사회보험 수준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2. 단기계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 VND 500,000 ~ VND 1,000,000(미화 기준 약 USD 25~USD 50)의 벌금 부과 가능
- ② 아래의 경우 사용자는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12%~15%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단, VND 75,000,000을 초과하지 않음)
 - (i)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 (ii) 사회보험료 일부를 미납하는 경우
 - (iii) 사회보험료 대상 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③ 사회보험료 대상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18%~2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3.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개정법 중 주목할 사항 하나가 여성에게만 해당되던 유급 출산휴가가 남성에게도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본 휴가일수는 5영업일이며,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 및 조산(임신 32주 미만)일 경우 7영업일, 쌍둥이 출산의 경우는 10영업일(단, 세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1인당 3영업일 추가), 제왕절개를 통한 쌍둥이 출산의 경우 14영업일을 각각 부여받습니다.

4. 퇴직연금 일시 지급 사유 축소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정년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에 도달할 경우 근로자는 매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일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사회보험 수당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제60조에 따르면 사회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축소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직 후 1년이 경과할 경우 사회보험에 따른 퇴직연금의 일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실직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없고, 대신 베트남법상의 정년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15년간 근무 후 실직한 45세 베트남 남성 근로자 A는 실직 후 1년이 경과된 후 15년간 지급된 사회보험료를 근거로 퇴직연금을 신청하고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에 따를 경우 A는 남성 정년 연령인 60세까지 기다린 후에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실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직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개정 사회보험법이 적용되는 2016년이 되므로 사회보험금 일시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년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실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게 되니 불만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을 우려한 정부의 교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회보험 수당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① 근로자가 정년 연령에 도달했으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이며,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 ② 근로자가 해외에 정착하는 경우(이민 등)
- ③ 근로자가 암, 나병, 소아마비, HIV 등 보건당국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릴 경우

5. 여성의 출산휴가

현행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여성근로자는 최대 4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건강하고 원할 경우 출산휴가를 4개월만 사용한 후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간의 충돌에 대하여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사회보험법의 제정 이후에 발효된 노동법이 우선하며 따라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6개월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사회보험법은 현행 노동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 진출(Master Franchisee 선정 방식) 시 주요 유의사항



(법무법인 지평 **한승혁** 호주변호사 · 말레이시아팀 팀장)

말레이시아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Franchise Act 1988 (as amended) (“프랜차이즈법”)에 따라 관련 기관인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의 Franchise Development Division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사업 영위를 위한 ‘등록제’를 두고 있으며 Malaysian Franchise Express (MyFEX)를 통해 온라인 등록 신청에 의한 심사 후, 등록 승인 여부를 Registrar(등록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래는 직접 투자(단독과 합작 투자 모두를 포함)에 따른 직영 매장 운영과 Franchising 사업 형태의 진출이 아닌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를 Master Franchisee(“MF”)로 선정하여 진출하는 방식에 한정된 유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접 투자 방식에 따른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시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외국 프랜차이즈(Franchisor)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향(Intention)을 갖고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의향에 대한 등록 신청 후, 승인을 취득해야만 Master Franchise 계약 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일체의 행위가 가능합니다(프랜차이즈법 제54조).

등록 신청 구비 서류 (guidance only)

- 의향서
- 프랜차이즈의 법인 설립일 및 운영
- 프랜차이즈의 회사 소개(배경 및 개념 위주)
- 프랜차이즈 경험
- 말레이시아내에서 MF로 예정된 사업자
- 프랜차이즈의 회사등기부등본(공증본)
- 상표등록증 공증본(또는 말레이시아 특허청 출원신청 증명서 공증본)
- 프랜차이즈의 브로셔
- 매장 사진

이외에도 기관에서는 프랜차이저의 최근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update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상 최소 1개의 직영 매장의 3년간 실적에 따라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래 캡처한 MyFEX website 하단 Reminder 2 참조).¹ 따라서 MF 선정 형태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등록 신청 당시의 등록기관 심사 기준에 대해 현지 전문가와 긴밀히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프랜차이즈 사업 의향 신청에 대한 등록이 승인되면 MF 대상자와 Master Franchise 계약을 추진할 수 있고 계약이 성사되면 MF는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전에 등록기관에 MF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¹ http://myfex.gov.my/portal/index.php?option=com_wrapper&view=wrapper&Itemid=83&lang=en

3. 프랜차이즈 매매를 위한 광고 시안은 이 광고가 출간, 배포 또는 사용되기 최소 5일전에 등록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광고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사용 금지 제재도 취할 수 있습니다.
4. 말레이시아 정부 공식 포털에서 MF의 요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Bumiputera (a Bumiputera corporate body, a Bumiputera company 또는 a Bumiputera person)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http://mygov.malaysia.gov.my/EN/Relevant%20Topics/MakeaBusiness/Business/StartingBusiness/FranchiseSystem/MasterFranchisee/Page/MasterFranchisee.aspx>). 이러한 정부 정책이 MF 등록 승인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2015년 6월 8일 등록기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이러한 요건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프랜차이즈 자문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에는 이와 같은 Bumiputera 요건은 찾아볼 수 없으나 비문서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 MF 선정 시나 프랜차이즈 사업 의향 신청 시 이 점에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사상 제일 엄격한 「식품안전법」 통과

개정 「식품안전법」이 지난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10장, 154개 조문으로 구성된 개정 식품안전법은 “사상 제일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개정 식품안전법은 (i)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과일, 야채, 차 재배 시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ii) 건강보조식품의 설명서에는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iii) 영유아 식품 생산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iv)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쇼핑몰 업체에 대한 책임을 신설하고, (v)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 의무 및 위반 시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무원,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 발표

국무원은 5월 초에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은 정부의 역할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조력자와 인도자로 정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정부의 행정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i) 완화된 거시적 발전환경 조성, (ii) 세제 혜택 부여, (iii) 기업의 시장진입 요건 완화, (iv)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 (v) 전자상거래 관련 취업 및 창업 지원, (vi) 산업구조 조정 촉진, (vii) 기초물류인프라 건설 개선, (viii) 대외개방 수준 향상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 외자기업 외환자본금 인민폐 환전 방식 개혁

외환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외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외환자본금 결제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외자기업의 외환자본금에 대하여 자율환전제도를 시행하여, 외자기업이 자주적으로 인민폐로 환전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ii) 외자기업의 외환 자본금 사용용도에 대해 네거티브리스트관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iii) 외자기업이 환전하여 취득한 인민폐 자금으로 중국 경내에서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iv) 환전 자금의 지급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하였으며, (v) 기타 직접투자항목하의 외환 계좌 내 자금의 결제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였고, (vi) 사후 감독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선거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법률(Law on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시행

캄보디아는 과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었고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치권은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거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법률(Law on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을 제정하였고, 위 법률이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 9인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선거위원회 구성과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정국 불안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개정회사법 시행

「회사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2015년 5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은 2014년 6월 20일 성립, 동월 27일 공포 되었습니다. 개정법으로 인한 개정 사항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주된 개정 사항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배경

회사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글로벌화 속에서 이사에 대한 감독에 있어 코포레이트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과 모자회사에 관한 규율 정비의 필요성이 회사법 제정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및 모자회사에 관한 규율의 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신뢰가 높아지고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며 더 나아가 일본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코포레이트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개정

(1) 사외이사기능의 활용

① 감사등위원회 설치 회사제도의 창설

현행법에 있는 감사회 설치회사 및 위원회 설치회사(개정 후 명칭은 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에 추가하여 감사등 위원회 설치회사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그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는 감사등 위원회가 감사를 맡아 업무집행자를 포함한 이사 인사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진술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창설한 것입니다.

② 사외이사 등의 요건 엄격화

주식회사 또는 자회사 업무집행자에 추가하여 모회사 업무집행자 등 및 형제회사의 업무집행자 등과 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계열관계에 있는 자도 그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등에 의한 업무집행자에 대한 감독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③ 사외이사를 둘 수 없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상장회사 등의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게 함으로써 사외이사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회계감사인 독립성 강화

회계감사인 선해임 등에 관한 의안 내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이사 또는 이사회로부터 감사 또는 감사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모자회사에 관한 규율 정비를 위한 개정

(1) 다중대표소송제도 창설

완전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하에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그 완전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중대표소송제도)를 창설하였습니다.

(2) 조직재편 금지청구제도 확충

합병 등의 조직재편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는 일정 요건하에 조직재편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해적 회사분할로 인하여 해를 끼친 채권자의 보호규정 신설

사해적 회사분할(분할회사가 승계회사에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승계채권자)와 당해 청구를 할 수 없는 채권자(잔존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승계회사에 우량사업 또는 자산을 승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잔존채권자 보호를 직접적이고 간명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분할회사가 잔존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회사분할을 한 경우 잔존채권자는 승계회사 등에 대하여 승계한 재산의 가격을 한도로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일본 법무성 뉴스레터 47호](#)

민법개정안 각의결정

일본정부는 3월 31일 계약규칙을 정하는 채권관계규정(채권법)의 민법개정안을 각의결정하였습니다. 금전임차 등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이외에 음식대와 진찰료 등의 내용으로 각각 있었던 지급시효를 5년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 [닛케이신문 - 債権法の民法改正案を閣議決定「法定利率」下げなど \(2015. 3. 31.\)](#)

2015년도 세제 개정법 성립

2015년도 세제 개정의 관련법이 3월 31일 국회에서 성립 되었습니다. 소비세 재증세의 연기가 정식으로 결정된 것 외에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기사]

- [닛케이신문 - 景気に配慮、改革先送り 15年度税制改正法が成立 \(2015. 4. 1.\)](#)

암반규제개혁 3가지 법안 각의결정

일본정부는 4월 3일 각의에서 아베신조수상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3가지 법안을 결정 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협법개정안, 고용규제 완화의 근무형태 개혁인 노동기준법개정안, 보육시설 개설이 쉬워지는 국가전략특구법개정안입니다.

[관련 기사]

- [岩盤規制改革、3法案を閣議決定 農協・雇用・特区 \(2015. 4. 3.\)](#)